

요약

- 포용적 보험(Inclusive insurance)은 필수 보험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포괄적 개념으로, 국내에서는 ① 정부의 포용적 금융 차원의 보험 정책과 ② 사회 변화에 따른 특정 계층의 보장 격차 해소를 위한 상품개발·제도개선 측면에서 포용적 보험이 시행되고 있음
- 포용적 금융 차원의 보험 정책은 취약계층의 보험 가입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2009년 미소금융중앙재단(현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보험 지원과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업권의 기금조성과 지자체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방안이 대표적임
- 특정 계층에 대한 보장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개발·제도개선은 포용적 금융 정책과 별도로 추진되었는데, 장애인·고령 유병자·배달 라이더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개발·제도개선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보험시장의 기능 강화를 통해 보장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
-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포용적 금융의 보험 정책은 민영보험시장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상품 공급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재원 조달의 안정화, 연속 보장 구조 설계, 취약계층의 자립적 보험 가입으로의 전환 유도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보장 격차 해소를 위한 상품개발·제도개선은 포용적 금융 정책과 별도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장 확대 측면에서 효과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데, 향후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새로운 보장 격차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품개발과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 서론

○ 포용적 보험(Inclusive insurance)은 사회경제적·인구통계학적 지위에 관계 없이 필수 보험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포괄적 개념임¹⁾

- 포용적 보험은 보험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수단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보장 사각지대에서 심화될 수 있는 보장 격차를 감소시키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함
-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는 포용적 보험을 빈곤층·저소득층에 국한하지 않고,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보험을 공급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함²⁾
 - 정보 비대칭, 낮은 수익성, 전통 채널의 한계, 디지털 격차, 높은 보험료, 위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시장 원리에 따른 위험 보장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³⁾
 - 포용적 보험은 상품, 채널, 규제, 정책 지원 등 보험 생태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재설계하는 시스템적 접근임

○ 국내에서 포용적 보험 사례들은 ① 정부의 포용적 금융 차원에서 추진하는 보험 정책과 ② 특정 계층의 보장 격차 해소를 위한 보험산업과 금융당국의 보장강화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포용적 보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취약계층의 보장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기금 조성, 대상자 선정, 필수 보험상품 가입 지원을 중심으로 시행됨
 - 포용적 보험보다는 '보험업권의 포용금융'이나 '보험업권 상생금융', '소액보험 사업 지원' 등의 용어가 사용됨
- 사회구조 변화 및 기술 발전으로 인해 특정 계층이나 분야에서 새로운 보장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험업권의 상품개발과 금융당국의 제도개선도 포용적 보험에 해당함
- 정부의 포용적 금융 차원의 정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에 비해, 보장강화를 위한 상품개발·제도개선은 취약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중점을 둠

○ 본고에서는 포용적 보험 추진 현황을 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적 금융 차원의 정책과 ② 보장 격차 해소를 위한 상품개발·제도개선 측면에서 검토하고, 포용적 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경제적 이유로 인한 보장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변화 및 기술 발전으로 인한 보장 격차 발생도 사회 안정을 해치고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효용 감소를 유발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포용적 보험의 추진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평가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1) Kai-Uwe Schanz(2024), "Inclusive Insurance in Advanced Economies: Alleviating strains on society", The Geneva Association

2) IAIS(2015), "Issues Paper on Conduct of Business in Inclusive Insu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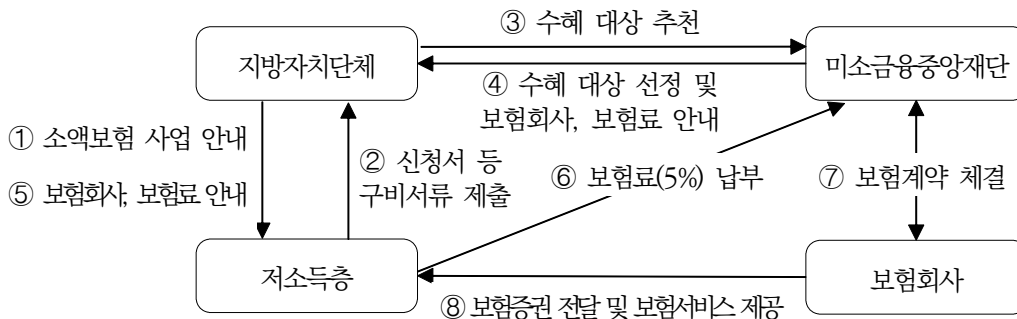
3) Geneva Association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을 Lack of availability, Lack of accessibility, Lack of affordability, Lack of awareness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

2. 포용적 보험 추진 현황

가. 포용적 금융 차원의 보험 정책

- 포용적 금융 차원의 보험 정책은 취약계층의 보험 가입을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에서 제공하는 보장을 통하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취약계층은 보험료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저조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문제로 이어지게 됨
 - 따라서 포용적 금융 차원의 보험 정책은 ① 지원 대상과 ② 보장이 필요한 위험을 선정하고 ③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장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음
 - 사고 발생 시 사후적인 지원보다는 민영보험을 통한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시장경제 시스템 내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 현재 포용적 금융의 시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 심화와 금융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저금리 대출 중심의 서민금융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액보험 가입 지원도 함께 추진되었음
 - 2009년 미소금융중앙재단(현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했으며, 보험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보험료를 지원하여 소액보험을 공급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내용이었음⁴⁾
 - 저소득층, 장애인복지시설, 미소금융 소액대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액보험 지원 사업으로, 재원은 휴면보험금의 운영수익이나 보험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수혜대상자도 최소한의 보험료(5%)를 부담하도록 함
 - 매년 약 50억 원 정도의 재원을 활용하여 소액보험을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소액보험 지원 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현재도 시행하고 있음

〈그림 1〉 미소금융재단의 소액보험사업 진행 절차(2010년)



자료: 금융위원회·미소금융중앙재단 보도자료(2010. 9. 20.), “미소금융중앙재단,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아동 등을 위한 소액보험 지원”

4) 금융위원회·미소금융중앙재단 보도자료(2010. 9. 20.), “미소금융중앙재단,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아동 등을 위한 소액보험 지원”

○ 2017년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포용 액션플랜(Financial Inclusion Action Plan; FIAP)」을 채택하면서, 국내에서도 보험분야의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포용적 보험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함

- 「2017 G20 금융포용 액션플랜」은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G20이 중점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포용적 보험의 기본 취지를 포함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 확대와 민간 부문과의 협업 등을 촉구하였음⁵⁾
-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혁신 4대 전략’ 중에서 포용적 금융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으며,⁶⁾ 이는 보험분야의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었음
 - 포용적 금융 세부 추진계획으로 ①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② 청년, 중·장년,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③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④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제시되었음

○ 최근에는 포용적 보험의 확대를 위해,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 대상과 보험의 종류를 모두 확대한 사회 취약계층 지원방안이 발표되었음

- 2025년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가 총 3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에게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상생보험(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을 3년간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함⁷⁾
- 2026년 3월에는 ① 보험회사와 지자체의 협력, ② 서민금융진흥원의 무상보험 확대, ③ 취약계층의 보험료 및 이자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⁸⁾ 2025년 발표 계획을 확대하고 보다 구체화한 것임
 - 보험회사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보험상품을 제공(보험료 지원 포함)하고 지자체를 통한 구체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판매 채널을 통해서도 보험 가입이 어려운 계층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보임
 - 신용생명보험 가입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기업은행, 0.3%p)하거나 햇살론 보증요율을 인하(서금원, 0.3%p)하였는데, 대상자들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인하로 이자비용이 경감됨

〈표 1〉 지자체별 상생보험 계획(안)

지자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경남	신용생명보험	소규모 음식점 화재배상책임보험
경북		소상공인 매출하락·휴업손해 보상보험
광주		소상공인 영업배상책임보험(타인 피해보상)
전남		청년 소상공인안심보험(상해·출산 등 지원)
제주		건설현장 기후보험(폭염으로 작업 중단시 소득보장)
충북		소상공인 사이버케어보험(보이스피싱 등 보상)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 3. 16.), “질병·사고·날씨 등 생활위험 보장보험에 무상으로 가입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보험업권이 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합니다.”

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8. 8), “G20,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한다-금융 포용성 진전을 향한 「2017 G20 금융포용 액션플랜」”

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1. 25.), “2018년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중금리대출 활성화 계획”

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 8. 26.), “보험업권 상생기금(300억원) 조성을 통한 무상보험 가입 추진”

8) 금융위원회(2026. 3. 16.), “질병·사고·날씨 등 생활위험 보장보험에 무상으로 가입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보험업권이 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합니다.”

나. 보장 격차 해소를 위한 상품개발·제도개선

- 특정 계층이나 직업 종사자에 대한 보장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개발·제도개선은 포용적 금융 정책과 별도로 추진되었으며, 보험시장의 기능 강화를 통해 보장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
 - 보험 가입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거나, 고령자 및 배달라이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장 격차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상품개발이나 제도개선이 핵심 내용임
 - 정부가 제도개선을 주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나 공급자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제도개선과 상품개발이 뒤따르면서, 특정 계층이나 직업 종사자의 보장 격차가 해소된 사례들이 대부분임
 -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례들을 포용적 금융의 보험 정책에 적극적으로 포함하지 않지만, 보험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의 보장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IAIS가 정의한 포용적 보험에 해당함

- 장애인의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은 정부 주도 형태의 대표적인 성과로 볼 수 있음
 - 금융당국은 가입심사 과정에서 보장이 축소되거나 가입 거절을 당하는 장애인 차별 문제를 장애인 전용보험을 통해 해소하려고 하였지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시장 원리에 부합하지 않아 판매는 저조하였음
 - 2001년 대형 보험회사들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 전용 고품리보장보험을 출시하였음
 - 그러나 고품리보장보험은 사망, 재해장해, 암보장 등 보장내용이 단순하였으며,⁹⁾ 장애인 혜택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할인하여 보험료를 낮추었으나, 낮은 모집 수수료로 인해 보험설계사의 판매 유인이 낮았음
 - 이후 금융당국은 전용상품 개발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장애인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일반 보험상품으로 확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음
 - 정부는 보험시장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 인식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업무 가이드라인」 작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보험 가입 시 차별 금지 명문화, ‘장애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폐지 등을 시행함
 - 또한, 장애인이 가입한 일반 상품을 장애인 전용보험에 준하여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관련 제도개선은 보험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장애인 차별 감소와 보험 가입 증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 장애인의 민영보험 가입 시 차별 경험이 감소(2014년 45.4% → 2023년 13.9%)한 것으로 보고됨¹⁰⁾
 -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민영보험 가입률을 33%로 추정하였으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질병·상해를 보장하는 민영건강보험으로 대상을 한정하여도 장애인 가입률이 41.4%인 것으로 조사됨¹¹⁾

- 고령자들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유병자 보험(2012년 도입)은 상품 개발과 제도개선을 통해 고령 유병자의 보장 격차를 해소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9)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1. 2. 19.), “「장애인전용보험상품」 개발·판매”

10) 이은영·강윤지(2024), 「국내 발달장애인 현황과 민영보험의 역할」,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11)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3. 1. 10.), “인권위,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발표·권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

- 과거에는 '표준청약서'에 따라 가입하는 표준체 시장만 존재했기 때문에, 보험청약 시점에서 3개월~5년 이내에 입원·수술 및 질병 진단 등의 이력이 있는 고령 유병자들의 보험 가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음
 - 보험 수요가 증가하는 고령 유병자의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인수심사 조건별로 청약서를 세분화하고 유병자에 대한 요율 차등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특정 계층의 보장 확대가 가능해짐
 - 보험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함으로써, 고령 유병자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둠
- 보험업계와 정부는 배달 라이더의 사고위험 보장 확대를 위하여 경직된 요율 및 상품구조를 개선하거나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하였는데, 특정 계층의 보장 격차 해소라는 포용적 보험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둠
-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은 높은 보험료로 인해 가입률이 매우 낮았으며, 연(年) 단위로만 보험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직경제(Gig Economy) 성장(시간·분 단위 배달업 종사자의 증가)으로 인한 보험 수요에 대응할 수 없었음
 - 2019년까지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가입률은 20% 미만으로 추정되었으며,¹²⁾ 시간제 종사자들은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미가입 상태로 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보험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요율제도가 개선되었으며,¹³⁾ 10분 단위로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이 개발되고 관련 제도가 개선됨¹⁴⁾
 - 또한, 정부는 배달서비스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2024년부터 유상운송 공제 상품이 출시되었는데, 배달 라이더들은 민영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보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둠

3. 포용적 보험 현황 평가 및 결론

- 포용적 보험은 특정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장격차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장 원리에 따라 민영보험시장에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IS는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정보 비대칭, 낮은 수익성, 전통 채널의 한계, 디지털 격차, 높은 보험료, 위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시장 원리에 따른 위험 보장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였음
 - 이러한 문제는 일회성 지원 정책보다는 특정 계층의 보험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 보장 격차 해소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시장의 생태계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포용적 금융의 보험 정책은 민영보험시장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상품 공급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보장격차 해소에 있어 독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정보 비대칭, 낮은 수익성, 전통 채널의 한계, 높은 보험료, 위험 인식 부족은 취약계층이 민영보험에 접근하기 어려운 원인임

12) 김규동(2023), 「이륜차보험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회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1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6. 28.),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륜차보험의 보험료 산정체계를 개선합니다."

14) 2019년 인수어테크 스타트업 스몰티켓이 10분 단위로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간제 이륜차보험을 최초 출시하였음

- 취약계층은 일반 가입자와 다른 위험 특성으로 인해 기존 보험상품으로는 필요한 보장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수익성과 전통 채널의 한계로 인해 보험회사가 소규모 특정 계층을 위한 상품을 개발·판매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취약계층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렵거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스스로 민영보험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을 가질 수 있음
- 포용적 금융의 보험 정책은 취약계층의 보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보장을 발굴하며, 적절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보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은 취약계층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보장격차를 해소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법임

○ 그러나 포용적 금융의 보험 정책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의 안정화, 연속 보장 구조 설계, 취약계층의 자립적 보험 가입으로의 전환 유도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보험업권 출연금이나 휴면보험금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은 경기 여건이나 보험회사의 수익성에 따라 재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가입자 입장에서도 보험 가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본인부담금을 이용한 재가입 방식이나 본인부담금의 단계적 상환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본인이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임
 - 우체국보험이 차상위 계층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상해보험 '만원의 행복'은 보험 가입의 지속성 유지와 가입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음¹⁵⁾

○ 보장 격차 해소를 위한 상품개발·제도개선은 실질적인 보장 확대 측면에서 효과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포용적 금융의 보험 정책이 재정 지원 등 외부적 유인을 통해 보장 격차를 해소하려 한 것과 달리, 상품개발·제도개선은 시장 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제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보험시장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이는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일시적 재정지원보다 시장 참여자의 유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제도적 접근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 상품개발 및 제도개선에 따른 보장 격차 해소 방안은 시장의 요구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험산업은 사회 변화에 따른 보장 수요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상품개발에, 금융당국은 시장 요구를 반영하는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음

- 모든 계층의 보험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포용적 금융 차원의 보험 정책뿐만 아니라 보험시장에서 보장 확대 기능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개발과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5) 가입자는 1년 만기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1만 원을 부담(3년 만기 상품은 3만 원)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우정사업본부가 부담하는 형태로, 만기 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만기환급금으로 환급해 주며, 가입자는 만기환급금을 이용하여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할 수 있음